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08

발의연월일 : 2022. 7. 12.

발 의 자:노용호·강민국·김성원

김영선 · 김영식 · 김용판

신원식 • 유경준 • 조명희

지성호 • 황보승희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주택의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제도를 확대하 여 시행(2020. 7. 10.~2023. 12. 31.)하고 있음.

그러나 가구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세대에만 적용되고,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취득 당시 가액 기준 비수도권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인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이 제외되어 관련 제도의 감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을 삭제하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등).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주택을"을 "따른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오피스텔을"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을 "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를 "무주택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

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u>따른</u>	<u>따른</u>
<u>주택을</u>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
경우로서 <u>합산소득이 7천만원</u>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오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	<u>피스텔을</u>
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	
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u>주택을</u>
(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	
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 우는 제외한다.

-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 |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세를 면제한다.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 산한 것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 로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 <삭 제>

- 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를 면제한다.
-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 ③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3항-----
- -- 무주택자 -----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 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 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 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률	제	18656	3호	지방	'세특	례제	한
•	법	일그	쿠개정	성법	를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								- —
-								- —
-								- —
-					<u>제40</u>	조의2	2제1형	항-
-								- —
-								
-								- —
-								- —
-								- —
-								- —
-								
-								
-								_
_					_			
					•			